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89호
2025. 1. 10.

- | 2025년 경제정책, 불확실성 대응한 안정적 관리에 중점
- | 日, ICT 시공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책 운용 현황과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25년 경제정책, 불확실성 대응한 안정적 관리에 중점

- 민생경제 위한 건설경기 조기 회복 유도정책 포함, 향후 추경 SOC 예산 필요 -

■ 건설 부문 활력 제고,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 기대

- 올해 국내 경제는 1.8% 성장할 전망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민생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내수는 고물가 고금리 완화로 소비와 설비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이 지난 2024년보다 둔화되고,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지속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결국, 성장률이 지난해 2.1%에서 올해 1.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지난 1월 2일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회복,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환경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로 정함.
 -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특히, 민생경제회복을 위해서 건설 부문의 활력 제고 관련 정책이 수립되었는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함.

<표 1> 2025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목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1. 민생경제 회복	경기	경기보강 강화 + 민생 신속지원 소비·건설 등 부문별 활력 제고	2. 대외 신인도 관리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민생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 투자(FDI) 촉진 잠재리스크 관리
3.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신대외경제전략 추진		4. 산업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혁신
	전략적 수출 지원			유망 신산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공급망 안정			핵심인프라 확충(전력·인재 등) 투자환경 개선 및 중소벤처 활성화

자료 : 기획재정부(2025.01.02),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년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설경기 회복 조기화 필요

- 2025년 제1정책과제 중 민생경제 회복의 정책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이중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표 2> “민생경제 회복” 세부 내용

중분류	세분류
(1) 획기적 경기보강	1. 총 18조원 규모 공공부문 가용재원 총동원해 경기 뒷받침
	2. 민생 신속지원 전례 없는 규모/속도의 신속집행 + 체감도 제고
(2) 소비활력제고	1. 세제, 재정 인센티브 확충, 소득보장을 통해 소비회복 촉진
	2. 국내관광 방한관광, 관광인프라 등 3대 분야 관광붐업 촉진
(3)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	1. 주택공급확대, SOC 조기 발주/착공 등으로 건설경기 보강
	2.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애로 해소
	3.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요인 해소
	4.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시의 정책 설계

주 : 건설산업과 관련이 높은 항목은 음영 표시.
 자료 : 기획재정부(2025.01.02),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택공급 확대, SOC 조기 발주·착공 등으로 건설경기 보강

- 주택공급 확대, SOC 조기 발주·착공 등으로 건설경기 보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주택공급 확대, SOC 조기 발주·착공 등으로 건설경기 보강” 세부 내용

❶ (공공주택) '25년 중 뉴:홈 10만호 공급,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8만호 착공	-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및 노후공공임대 (158개 단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 수립(상반기) - LH·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합산 배제 - 신축매입 임대는 '24~'26년간 15만호 공급, 3만호 이상 상반기에 조기약정 체결 -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상반기 조기집행 (4.5천억원, 100%) 및 규모확대 (+3천억원)추진 *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해 운영하는 리츠
❷ (수도권 주택) 수도권 중심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상반기)	- '24년 旣발표한 5만호* '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완료(서울 서리풀 2만호, 의왕 오전왕곡 1.4만호, 고양 대곡 0.94만호, 의정부 용현 0.7만호) - 3기 신도시는 '25년 중 1.2만호 착공하고 0.8만호 분양 추진
❸ SOC 예산 상반기 내 70% 집행	- '25예산 중 6.8조원, 1분기 52% 집행 목표 -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착공하여 상반기 내 70% 집행

- 먼저 공공주택을 '25년 중 뉴:홈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8만호 착공할 계획임.
- 두 번째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중 1.2만호 연내 착공을 추진할 예정임.
- 세 번째로 SOC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70% 집행하는 것임.

■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 애로 해소

-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 애로 해소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로 공공사업 공사비와 관련해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 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사업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보정 기준의 세분화, 턴키 수의계약 체결 시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 반영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두 번째로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 10% 인상(매입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110%로 상향) 추진함.
- 세 번째로 분양가 관련 항목으로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 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는 것임.

<표 4>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애로 해소 세부 내용

① 공공사업 공사비	-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 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 * ① 시공 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따라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신설 ② 턴키 수의계약 체결 시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 반영 추진 등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 및 공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보완방안 마련(25)(공공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하여 시공사에 자재를 지급하는 제도)
② 임대주택 매입가	-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 10% 인상 (매입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110%로 상향)
③ 분양가	- 분양가 산정 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

■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 요인 해소

-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 요인 해소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로 착공·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및 부담금을 완화하는 것임.
- 두 번째로 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등을 포함함.

- 그 외, 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소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과,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표 5>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요인 해소 세부 내용

<p>① (규제·부담금) 착공·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非수도권 100%) - 사업추진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1년) 완화(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저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 LH 토지 등 매입한 사업자(시행사·건설사 등)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인하 추진 -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 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 검토** *접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해 해당부지 건축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①동시건축 의무, ②거래대지 간 거리제한, ③결합건축 가능지역 등 제도 전반 검토 -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입법지속
<p>② (세부담) 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26.5) -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 기준) 상향([건설형] (現) 9억원 이하→ (改) 12억원 이하, [매입형] (現)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改)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하고,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 신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p>③ (현안애로) 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소 등 사업 정상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공실 등을 다양한 용도(주거, 업무, 문화시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방안 검토(연구용역을 통해 기축신축 건축물이 복합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검토)
<p>④ (보증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

-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 세부 내용은, 첫째로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세움.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하고,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완화할 계획(공시가격 1억 → 4억원 이하)임.
- 두 번째로 지방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재정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지방에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는 것임. 그 외 기회발전 특구에 이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상속 공제를 확대 추진하는 것과, 지역별 원가분석을 통해 지방에 완화된 전기요금으로 데이터센터 등의 건설을 지방에 유도하는 방안임. 마지막으로 산단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이 폭넓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됨.

<표 6>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 세부 내용

<p>① (부동산)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본격 추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25.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4.1.10~'25.12.31일까지 취득 시 ②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24.1.10~'25.12.31일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5.12.31일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
<p>② (재정사업) 지방 인센티브 지원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소비활력 제고 등 재정지원 프로그램설계* 시 지방에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예) 숙박 쿠폰은 비수도권에 한해 지원
<p>③ 기업상속 공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 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확대 추진
<p>④ (전기요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 여건을 반영해 지역별 SMP(전력 도매가격) 도입, 송·배전비용 등 원가분석 거쳐 소매요금도 지역별 적용 추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4.6월 시행) 입법 취지에 맞춰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자원의 지방 이전을 유도, 국가 전력공급 효율화 및 균형발전 촉진
<p>⑤ (산단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이 폭넓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 [現] 해당 입주기업 직원만 사용 가능한 부대시설(구내식당 등) 설치만 허용 [改] 타 기업 직원도 사용 가능한 부대시설(문화·체육시설, 카페 등) 설치 허용

■ **시장에 긍정적 영향 예상, 다만 건설경기 조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듯**

- ‘민생경제’를 위해서 건설경기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며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 주택 구매를 활발하게 하는 다양한 대책은 향후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SOC 예산이 2024년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건설경기를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주택공급 및 수요를 보완하는 가운데 공공공사 건설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임.
- 적극적인 재정사업보다는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 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침체하는 건설 경기를 바로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올해 SOC 예산이 25.4조원으로 지난해(26.4조원)보다 1조원 가까이 삭감된 상황에서 상반기에 70% 최대치로 배정한다 해도 전체 공공공사 물량이 지난해보다 낮을 수밖에 없음.

■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위해, 추경 SOC 예산 편성과 추가적인 재정사업 필요

-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SOC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 6.5명보다 1.7배(4.3명)나 더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음.
 - 또한, 건설 활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콘크리트, 기계, 장비, 전기 기계 등 연관 산업의 산출물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뛰어나 단기간에 내수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음.
 - 다만, 정부가 내세운 주택공급 활성화 안은 올해에 당장 공사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허가 발생 이후에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분양이 이뤄져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민간에서 분양을 늘리는 등 주택 공사가 바로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임.
- 결국, 단기간에 공사 물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재정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자원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박철한(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日, ICT 시공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책 운용 현황과 시사점

- 기술 활용 지원·직접적 지원책 등 다양화·대상 확대 등을 통한 정부 지원 실효성 제고 -

■ 日, 'i-Construction 1.0 & 2.0' 정책의 단계적 추진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도모

- 일본(국토교통성)은 지난 2016년 정부 차원의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 중 하나로 'i-Construction (ver. 1.0)' 정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 내 ICT 기술 도입을 통해 2025년까지 건설 현장 생산성 20%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도입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드론 등(Unmanned Aerial Vehicle, UAV)을 활용한 3차원 측량', '건설 중장비와 ICT 기술을 접목한 (반)자동화 시공', 'BIM/CIM¹⁾ 플랫폼 기반 검사' 기술의 우선적 도입·정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이어 지난 2024년 4월에는 'i-Construction 1.0' 정책의 후속 조치이자 기존 정책을 고도화한 'i-Construction 2.0'을 통해 '2040년까지 투입 인력의 30% 감축 또는 생산성 1.5배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함.
 -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원격·자동화 건설기계 보급을 통한 시공 자동화', 'BIM/CIM 기반 데이터 연계 및 디지털화', '표준화·모듈화·데이터 연계를 통한 시공관리 자동화'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건설 현장의 전면 자동화'를 추진함.
- 이러한 배경하에 본 고에서는 일본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i-Construction'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재정지원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건설산업 내 스마트 건설기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벤치마킹 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日, 건설기계 도입 및 인력 양성 등 ICT 기술 확산을 위한 보조금·세제 우대·저이자 대출 지원

- 일본이 건설산업 내 ICT 기술 확산 및 'i-Construction' 정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세제 우대·저이자 대출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크게 'ICT 건설기계 및 시스템의 도입·임차', '3차원 데이터 작성 소프트웨어의 도입', '건설 근로자 및 신규 분야 인력 양성'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분야별 지원사업으로는 (보조금) '제조·상업·서비스 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사업 재구축 보조금'·'서

1) CIM은 건설 정보 모델링 및 관리(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ing/Management)의 약자로, 일본의 경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대신하여 일본 건설 환경에 적합한 BIM 모델을 의미하는 용어로 BIM/CIM 용어를 활용함.

비스 등 생산성 향상 도입 지원사업'·'인재개발 지원 보조금', (세제 우대 지원사업) '첨단 설비 등 도입 제도'·'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 (저이자 대출) 'IT 활용 촉진 자금'을 운영 중이며, 개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 일본 ICT 기술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운영 현황

지원 분야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항목	지원 기관
보조금	제조·상업·서비스 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시제품 개발, 생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예) ICT 건설기계 및 시스템 	구매비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
	사업 재구축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감한 사업 재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의 도전 지원 (예) ICT 건설기계 및 시스템 	구매비	
	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 IT 도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Tool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교육 비용 등 (예) 데이터 작성 소프트웨어 	구매비	
	인재개발 지원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등이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 경비나 임금의 일부 보조 	연수비·임금 보조	후생노동성
세제 우대	첨단 설비 등 도입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기간 내 판매된 모델로 생산성이 구모델 대비 1% 이상 향상되는 건설기계 및 ICT 시공 기기 등 	고정자산세	지자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이 연평균 1% 이상 향상되는 건설기계, 정보화 시공기기 등 	법인세	중소기업청
저이자 대출	IT 활용 촉진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시공기기의 구입 및 임차 	구입·임차비	일본정책 금융공고

자료 : 建設ICT.com, <kensetsu-ict.com>, 검색일 : 2025.1.6.

● [제조·상업·서비스 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대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시제품 개발, 생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건설업의 경우 ICT 건설기계 및 시스템의 구매 등이 이에 해당함. 지원 유형은 크게 '생력화(省力化, 노동력 절감)', '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글로벌화'로 구분되며, 유형별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을 받기 위한 일반 요건으로 건설업은 '자본금 3억엔 이하, 종업원 수 300명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부가가치액 연평균 성장률 3% 증가', '급여지급총액 연평균 성장률 1.5% 증가',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30엔] 초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실행이 요구됨.
- 보조금 규모는 보조금 상한액 750만~3,000만엔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1/2 또는 2/3에 해당하는 각기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5년 사이 대폭적인 임금 인상에 임하는 사업자(급여지급총액 연평균 성장률 +6% 이상 등)에 대해 보조금 상한액을 100만~2,000만엔 추가 지원하고 있음.

- 보조 대상 경비로는 '기계장치·시스템 구축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경비, 운반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비, 원재료비, 외주비, 지적재산 관련 경비' 등을 포함함.

<표 2> 일본 '제조·상업·서비스 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생력화 (省力化, 노동력 절감)	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글로벌화
		보통 유형	성장분야 진출 유형 (DX·GX)	
일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자본금 3억엔 이하, 종업원 수 300명 이하 • 부가가치액 연평균 성장률 3% 증가, 급여지급총액 연평균 성장률 1.5% 증가,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30엔] 초과 			
보조 상한액	750만~8,000만엔 (1,000만~1억엔)	750만~1,250만엔 (850만~2,250만엔)	1,000만~2,500만엔 (1,100만~3,500만엔)	3,000만엔 (3,100만~4,000만엔)
	* ()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5년에 대표적인 임금 인상에 임하는 사업자(급여지급총액 연평균 성장률 +6% 이상 등)에 대하여 보조 상한액을 100만엔~2,000만엔 추가			
보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1/2 • 소규모·재생 :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1/2 • 소규모·재생 :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1/2 • 소규모 : 2/3
보조 대상 경비	기계장치·시스템 구축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경비, 운반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비, 원재료비, 외주비, 지적재산 관련 경비 등			

주 : (※)의 경우 보조금액 1,500만엔까지는 1/2 또는 2/3, 1,500만엔을 넘는 부분은 1/3 적용.

자료 : 建設ICT.com, <kensetsu-ict.com>, 검색일 : 2025.1.6.

- **[사업 재구축 보조금]**은 코로나 및 시장 축소 등 직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재구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 사업자 대상 건설기계·시스템 등 기계장치 구입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성장분야 진출', '코로나 회복 가속화', '공급망 강화' 유형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는 '지침에 따른 사업 재구축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계획을 금융기관 등이나 경영 혁신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을 것', '보조사업 종료 후 3~5년 부가가치액의 연평균 성장률 3.0~5.0% 또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의 연평균 성장률 3.0~5.0%'를 포함함.
 - 보조금 규모는 보조금 상한액 1,500만~3억엔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1/2 또는 1/3 등 각기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기에 대규모 임금 인상을 실시하거나 건물비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보조율을 운영 중임.
 - 보조 대상 경비로는 '성장분야 진출' 및 '코로나 회복 가속화' 유형의 경우 '건물비, 기계장치·시스템 구축비, 기술 도입비, 외주비·전문가 경비, 광고비, 판매 촉진비, 연수비, 폐업비(성장분야 보통 유형)'를 대상으로 하며, '공급망 강화' 유형은 '건물비, 기계장치·시스템 구축비'를 포함함.
- **[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 IT 도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개인 사업자 대상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IT Tool(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도입 및 관련 경비를 보조함.
 - 신청 요건은 '1년 후 노동생산성 3% 이상 향상', '사업계획 기간 내 노동생산성 연평균 성장률 3% 이상 향상',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생산성 향상 목표'를 충족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실행이 요구됨.

- 보조금 규모는 IT Tool 도입에 따른 업무 및 프로세스 개선 수에 따라 5만~450만엔이 환원되며, 지원 대상 경비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클라우드 이용료, 기타 도입 관련 비용을 포함함.

<표 3> 일본 '사업 재구축 보조금' 주요 내용

구 분	성장분야 진출		코로나 회복 가속화		공급망 강화
	보통 유형	GX	보통 유형	최저임금 유형	
대상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성장 분야에의 사업 재구축에 임하는 사업자, 시장 축소 등의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한 사업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녹색성장전략 실행계획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채무를 대체하고 있는 사업자 및 사업 재구축에 임하는 사업자	코로나가 종식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대처를 향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보조 상한	3,000만엔 (※4,000만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5,000만엔 (※6,000만엔) (중견)1억엔 (※1.5억엔) 	2,000만엔	1,500만엔	3억엔(♣5억엔)
보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1/2(※2/3) (중견)1/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2/3 (중견)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3/4 (일부 2/3) (중견)2/3 (일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1/2 (중견)1/3
대상 경비	건물비, 기계장치·시스템 구축비, 기술 도입비, 외주비·전문가 경비, 광고비, 판매 촉진비, 연수비, 폐업비(성장분야 보통 유형만)				건물비, 기계장치·시스템 구축비
필수요건 (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 사업 재구축 지침에 나타나는 '사업 재구축'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자 B : 사업계획을 금융기관 등이나 경영 혁신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을 것 C : 보조사업 종료 후 3~5년 부가가치액의 연평균 성장률 3.0~5.0% 또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의 연평균 성장률 3.0~5.0% 				

주 : (※)의 경우 단기에 대규모 임금 인상을 하는 경우, (♣)의 경우 건물비를 포함한 경우

자료 : 建設ICT.com, <kensetsu-ict.com>, 검색일 : 2025.1.6.

<표 4> 일본 '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 IT 도입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일본 내 법인 등기 및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건설업의 경우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 사업자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만~150만엔 미만 : 업무 및 프로세스 개선 관련 수 1 이상 150만~450만엔 미만 : 업무 및 프로세스 개선 관련 수 4 이상
보조율	1/2
대상 경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클라우드 이용료(최대 2년분), 기타 도입 관련 비용
신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후 노동생산성 3% 이상 향상시킬 것 - 사업계획 기간 내 노동생산성 연평균 성장률 3% 이상 향상시킬 것 - 생산성 향상 목표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일 것

자료 : 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 IT 도입 지원사업 사무국(2024)(2024), 서비스 등 생산성 향상 IT 도입 지원 사업비 보조금, 建設ICT.com, <kensetsu-ict.com>, 검색일 : 2025.1.6.; FuKul COMPUTER, <const.fukuicompu.co.jp>, 검색일 : 2025.1.6.

- [인재개발 지원 보조금]은 국내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직원(종업원)의 직업능력 개발에 임하였을 경우 연수비용 또는 임금을 지원함. 지원 유형은 크게 건설 사업주가 건설 노동자의 고용 개선이나 기술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수강하는 경우 지원하는 ‘건설 노동자 기술 실습 코스’와 건설 DX·GX 등 새로운 분야의 사업 추진 위한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리스킬링 지원 코스’로 나눌 수 있음.
 - ‘건설 노동자 기술 실습 코스’는 다시 건설 노동자가 공인 직업 훈련 등을 실시·수강하는 경우 지원하는 ‘건설 노동자 공인 훈련 과정’과 청소년 등의 육성과 기술 실습을 지원하는 ‘건설 노동자 기술 실습 코스’로 구분됨.
 - ‘리스킬링 지원 코스’는 디지털 및 그린 등과 같은 성장분야 기술 도입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건설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및 탈탄소화(GX)를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금 역할을 수행함.
 - 인재개발 지원 보조금은 상술한 ‘건설 노동자 기술 실습 코스’와 ‘리스킬링 지원 코스’의 대상·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대상 건설 노동자 및 지도원 등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임금을 보조함.

<표 5> 일본 ‘인재개발 지원 보조금’ 주요 내용

건설 노동자 기술 실습 코스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건설 노동자 공인 훈련 과정	• 공인 직업 훈련 또는 지도원 훈련 중 건설 관련 훈련을 실시한 경우	(경비) 1/6
	• 건설 노동자에게 인정 훈련을 수강시킨 경우	(임금) 3,800엔/인·일(※1,000엔/인·일)
건설 노동자 기술 실습 코스	• 청소년 등의 육성과 훈련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커리어에 따른 기술 실습을 실시한 경우	• 중소 건설 사업주(20명 이하) - (경비) 3/4(※3/20) - (임금) 8,550엔/인·일 (※2,000엔/인·일)
		• 중소 건설 사업주(21명 이상) - (경비) 7/10(※3/20) - (임금) 7,600엔/인·일(※1,750엔/인·일)
리스킬링 지원 코스		
구 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의 경우 자본금 3억엔 이하, 종업원 수 300명 이하 중소기업 •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신제품의 제조나 신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거나 디지털·그린 등과 같은 성장분야 기술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화 등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에 얽매이지 않는 신규 사업의 시작 등을 위한 인재 육성 - 업무의 효율화나 탈탄소화 등을 위해 DX·GX를 추진하기 위한 인재 육성 	
지원 내용	• 기업의 사업 활동과 구별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연수 등)에 대해 소요 경비의 75%, 소요 임금의 960엔/인·일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DX·GX 인재 육성을 위한 최적의 보조금 • 실훈련 시간 10시간 이상 요구 	

주 : (※)는 임금 요건 또는 자격 등 수당 요건을 만족하였을 경우에 대한 증액분.

자료 : 建設ICT.com, <kensetsu-ict.com>, 검색일 : 2025.1.6.

- **[첨단 설비 등 도입 제도]**는 중소기업청 등이 추진하는 ICT 기술 확산을 위한 세제 우대 방안 중 하나로, 신규 설비의 취득일 이전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 및 종업원 수 1,000명 이하 개인 사업주 등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3년간에 한해 1/2로 경감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예산의 한계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등을 도입하기 어려운 건설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및 판매 활동 등에 직접적 연관성을 지니는 중고자산이 아닌 ‘기계장치’, ‘측정 공구 및 검사 공구’, ‘기구 비품’, ‘건물 부속 설비’를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 역시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ICT 기술 확산을 위한 세제 우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에 따른 ‘경영력 향상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새로운 설비를 취득하여 지정된 사업에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하여 즉시 상각 또는 취득가격의 10% 세액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임.
 - 해당 제도는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구체적으로 ‘생산성 향상 설비(생산성이 구 모델 대비 연평균 1% 이상 향상되는 설비)’, ‘수익성 강화 설비(투자 수익률이 연평균 5% 이상인 투자 계획 관련 설비)’, ‘디지털화 설비(시각화, 원격 조작 또는 자동 제어를 지원하는 설비)’, ‘경영 자원 집약화 설비(유형 고정자산 회전율이 일정 이상인 투자 계획 관련 설비)’가 있음.
 - 대상 설비로는 ‘생산 등 설비 구성’·‘중고·대출 자산이 아닐 것’·‘국내 투자’ 조건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기구 비품·공구’, ‘건물 부속 설비’를 대상으로 함.

<표 6> 일본 ‘첨단 설비 등 도입 제도’ 및 ‘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 주요 내용

구 분	첨단 설비 등 도입 제도	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3년간에 한하여 1/2로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에 대하여 즉시 상각 또는 취득가격의 10% 세액공제 선택 적용 (자본금 3,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 법인은 7%) • 4개 유형 운영 : 생산성 향상 설비, 수익성 강화 설비, 디지털화 설비, 경영 자원 집약화에 기여하는 설비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 종업원 수 1,000명 이하 개인 사업주 등 • 신규 설비의 취득일 이전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억엔 이하 법인 • 자본 또는 출자가 없는 법인 중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 법인 •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하인 개인 협동조합 등 • ‘경영력 향상 계획’ 승인 필요
대상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160만엔 이상) • 측정 공구 및 검사 공구(30만엔 이상) • 기구 비품(30만엔 이상) • 건물 부속 설비(60만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160만엔 이상) • 소프트웨어(70만엔 이상) • 기구 비품·공구(30만엔 이상) • 건물 부속 설비(60만엔 이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및 판매 활동 등에 직접적 제공되는 것 • 중고자산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등 설비를 구성하는 것 • 국내 투자에 투자하는 것 • 중고 자산·대출 자산이 아닐 것

자료 : 建設ICT.com, <kensetsu-ict.com>, 검색일 : 2025.1.6.

- **IT 활용 촉진 자금**은 정부 전액 출자의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내 급속히 진행되는 IT화에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IT 관련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로 민간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정보화 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정부 인증을 받은 정보 처리 지원 기관’, ‘텔레워크 도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한 직접 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 방식에 따라 상이한 대출 한도액을 운용하고 있음.
 - 저리 대출 대상 기간은 설비 자금의 경우 20년 이내, 운전 자금의 경우 7년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금의 용도와 대출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함.

<표 6> 일본 'IT 활용 촉진 자금'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를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내 업무 개선 및 정보교환 등 업무의 고도화 - 타 기업, 소비자 등과의 네트워크상 거래 및 정보 수발신 - 기업 내 업무의 IT 수준을 거래처 등 기업 외 IT 수준으로 고도화 - IT의 활용으로 업무 방법, 내용 등 경영 혁신 - 상술한 사항의 조합 및 IT 기술의 높은 수준 활용 •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정보 처리 지원 기관 • 「특정 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에 근거한 ‘특정 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 개발 공급계획’의 승인 또는 ‘특정 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 개발 도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 • 텔레워크²⁾의 도입 등을 실시
대출 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대출) 7억 2천만엔 • (대리 대출) 1억 2천만엔
대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자금 : 20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운전 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은 자금의 용도와 대출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

자료 : 建設ICT.com, <kensetsu-ict.com>, 검색일 : 2025.1.6.

■ 시사점

-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일본의 건설산업 내 ICT 기술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방안은 건설기업의 ‘기술 도입 과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관한 지원’, ‘기술 활용 과정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2) ‘텔레워크(Telework)’란 각종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과 지원으로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장소와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재택근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건설산업 내 ICT 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기술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 보조·세제 우대·저이자 대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유도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는 등 비용·세제·용자 차원의 직접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다수의 지원 방안 추진에 있어 건설업의 경우 자본금 3억엔 이하, 종업원 수 300명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원 체계의 경우는 일본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i-Construction’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전(全) 산업 대상 기업 및 인력에 관한 지원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 후생노동성, 일본정책금융공고, 개별 지자체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중소벤처기업부 등) 환경과는 달리 일본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 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통해 건설기업 역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됨.
- 한편, 국내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일본과 달리 ‘기술의 도입·활용보다는 개발·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술의 도입·활용 주체인 건설기업보다는 기술 개발·확보 주체인 스타트업 등 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추진해 옴.
 - 예를 들어, 그간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 추진해 온 스타트업 등 기술개발기업 대상의 ‘창업공간 제공·멘토링 및 컨설팅·시작품 제작 지원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과 함께 핵심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확보를 위한 R&D 추진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지원 방식 및 체계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비용·세제·용자 등 직접적 지원 방안’보다는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역량 강화·투자 지원·시장 확대 및 홍보 등 간접적 지원책’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물론, 국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운영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수혜 기업에서 건설업이 소외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주도하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별도 지원 방안을 운용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간접적 기업 지원 방안 외 일본과 같이 비용·세제·용자 등의 직접적 지원 방안의 추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과 국내의 ICT 기술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에 관한 산업환경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 건설산업 역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첫째, 지원 내용의 경우 기술 확산 초창기 특성상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확보 관점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5년 ‘대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R&D 사업 종료’ 예정이며,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17)’을 시작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가 일정 기간 경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확보 관점에서 도입·확산 관점에서의 전환을 통한 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간접적 기업 지원 방안과 더불어 일본과 같이 보조금(비용) 지원·세제 우대·저이자 대출 등 직접적 지원 방안 역시 함께 운용한다면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산업 내 스마트 건설기술 고도화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셋째, 지원 대상의 경우는 국내와 일본 모두 중소 건설기업 및 스타트업 등 기술개발기업을 위주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향후에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확산의 관점에서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 활용을 유도하는 지원 방안 확대와 더불어 기술 확산의 대표적인 주체로 볼 수 있는 대형 건설기업 대상 지원책 운용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대형 건설기업의 경우는 중소 건설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도입 여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 등의 비용적 지원보다는 세제나 시장 확대, 인력 양성, 각종 조사 면제(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 등의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산업 환경상 건설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수혜를 받기 힘든 구조이기에, 건설산업 주무 부처이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기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임.
 - 다만, 국내 전(全) 산업 대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건설업 내 중소기업 또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원 방안을 별도 운영하거나 기존 지원 방안을 통해 건설업의 선정을 유도하는 경우 기존 국토교통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의 중복성 검토가 요구됨.

이광표(연구위원 · leekp@cerik.re.kr)